

# 연구보고서 최종평가회 회의록

1. 과 제 명 :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
2. 일 시 : 2022년 11월 10일 (목요일)
3.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
4. 참석위원 : 총 5인
5. 최종 평가 및 보완 의견

## ■ 종합의견

### [연구의 우수성]

- 금액에 비해 우수한 연구를 해주었고, 다양한 정보가 수집된 내실있는 연구로 판단되며, 과제수행의 성실성이 보임
-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전략의 신뢰성을 높였고, 추후 발전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음
- 국내의 기존 보호 현황도 잘 분석하였고, 주요국 저작권 보호 체계를 충실히 분석하여,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적절히 도출함
- 향후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목표에 충실하였음

### [보완점]

- 연구내용이 과업범위에 맞게 작성되었으나, 제언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함
- 결론 및 제언 부부에 있어서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제언과 더불어 실행방안, 후속연구과제에 대한 언급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
- 컨트롤타워와 현지 사무소의 관계설정, 현지사무소와 권리자의 역할 설정 등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
- 해외 사무소 설립이 필요한 국가 1순위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, 중국 북경사무소와의 관계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기술할 필요 있음

### [후속과제 추진 필요성]

- 이 연구에서 섹터별로 많은 것을 다루어 주었으니, 보호원에서 섹터당 후속 과제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
  - 이 연구보고서 내용에 섹터별 후속과제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다면, 계속 연구과제 측면에 이어서, 근거 자료로 삼기 좋을 것임
- 이 연구는 기초자료로서 활용가능성 있지만,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임
  - 후속과제에서는 장르별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
  - 해외사무소 기능이 있는 기관 간 중복 방지 등을 후속 연구에 반영한다면 실효성 있는 체계 도출이 가능할 것

### ■ 세부의견

#### [사무소 국가 선정 관련]

- 시뮬레이션은 좋으나, 대만이 들어가면 중국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삼을 수 있음. 북경 사무소 폐쇄를 전제하지 않으면, 정책적인 판단 차원에서 연구보고서 발간 시,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
  - 다만, 코트라의 경우 베이징 본부를 두고 산하에 타이페이 사무소를 두는 방법으로 운영한 사례는 있음
-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도 국내 콘텐츠 수출이나 관심이 크지 않은 바, 어떤 의미에서 반영이 된 것인지 재검토 등 필요
- 콘텐츠 소비양상을 보면, 국가보다는 언어권이 핵심이었음. 언어권에 따라 그 콘텐츠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으니,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
- 해외사무소 명칭 자체에서 오는 의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함

#### [해외사업 운영 관련: 민간 주도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]

- 정부기관이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,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원 해외사업에서 해야 할 역할임
-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은 궁극적으로 권리자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업체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
- 해외 저작권 보호의 경우, 정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

직접 업체에서 해야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, 업체 지원이나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이 연구보고서에 포함되면 좋겠음

- 동남아시아에서 법집행이 잘 안되었던 이유는 현지 로펌 활용비용이 부족한 것이며, 법집행이나 모니터링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
  - 권리자들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한 능력이 없으며, 법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큰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
  - 바우처 사업 예산도 비용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정부는 이런 류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하며, 비용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

#### [해외사업 운영 관련: 전담인력양성 필요]

- 사무소를 당장 신설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보이므로, 해외사업부의 타 사업을 통해 '인력양성' 측면에서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
  - 예컨대,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 등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, 시범사업을 해보고, 현지 법집행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
  - 장르별 관련 협회에 비용을 지원해준다면, 전담인력 배치가 가능해질 것이고 추후 피해접수 사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
- 타 기관의 경우 통신원을 활용하고 있는데, 길지 않은 기간이라도 해외 사무소에는 인력이 부족하여,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함

#### [역할 및 기능 관련]

-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, KOTRA나 콘진원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중복 방지하는 것이 중요
  - KOTRA나 콘진원에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많은데 비해, 모니터링이나 법집행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크지 않을 것임
  - 기간관 업무중복 문제와 협업의 부분에 있어서, 향후 보호원 후속연구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
- 산업부 산하와 문체부 산하 부처간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관련하여 부처간 다툼이 있거나 구분을 짓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함
  -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

### [기타 의견]

- 이 연구의 핵심은 수출보다는 콘텐츠의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, 어떻게 법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, 사무소를 어떻게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한
  - 다만, 사무소가 이제껏 효과적으로 일을 해왔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함
- 해외 현지에서 힘을 발휘하려면, 문체부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, 현실적으로는 외교부가 힘을 써야하고, 법무부의 힘도 함께 필요할 것임
  -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은 현지 법집행 문제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임
  - 해외 불법복제 등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, FTA 등 국가차원의 협정이 필요함
- 보호원 대응체계가 국내위주로 되어있는 이유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, 해외에서 집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므로,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국내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고려하여 전략을 짜야함

### [작성 형식 관련]

- 최종보고서 발간 전이라 양식을 통일하지 않은 듯하니, 표/그림의 양식이나 글씨체, 글씨크기 등을 가급적 통일하여, 정돈시키고 각주 문단들여쓰기 정렬을 요망함. 잘 정리된 내용이 돋보일 것임
- 초록 등에서 사소한 오탈자가 확인되는바, 발간 전 오탈자 검수를 바람